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4. 26 선고 2020가단1100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

담당변호사 좌세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산

담당변호사 송기출

변 론 종 결 2022. 3. 22.

판 결 선 고 2022. 4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C과 피고 사이에 2018. 11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1. 21. 접수 제181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는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,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21. 12. 3. C으로부터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,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경위,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내용, 당사자의 소송활동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연수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특별시 성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F동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성동구 G

철근콘크리트구조, 벽식구조 평슬라브지붕 12층 아파트

1층 57.18㎡

2층 480.97㎡

3층 480.97㎡

4층 480.97㎡

5층 478.25㎡

6층 478.25㎡

7층 478.25㎡

8층 478.25㎡

9층 478.25㎡

10층 392.56㎡

11층 392.56㎡

12층 112.10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7층 H호

철근콘크리트구조

80.8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토지의 표시: 서울특별시 성동구 D 대 5154.5㎡

대지권의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5154.5분의 40.357. 끝.

